

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55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3. 11.
제출자	거창군수

제정이유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지원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-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토록 함(안 제3조)
- 읍·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·운영토록 하고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및 신청대상자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토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읍·면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함(안 제6조)
-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지원사업계획 확정시 해당 읍·면장에게 통보하고, 읍·면장은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(안 제7조)

제정근거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3조및시행령제24조제3항 (2002. 1. 14. 공포)
- 경남도 수질 67400 - 11357(2003.7.5)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(표준안)

거창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3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주민회의 개최)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, 그 결과를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) ① 지원대상지역 읍·면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·면장으로 하고,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군의원과 이장으로 한다.

③ 당해 읍·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 임무)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
2.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
3.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

제6조(사업계획수립) ① 지원대상지역 읍·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,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 결과,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

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읍·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단,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사업 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,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계획수립 등 통보) 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지원사업계획 확정시 그 내용을 해당 읍·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당해 읍·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